제277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회의 2021. 03. 22.(월)

##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

# 검토보고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##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1차안 검토보고

### 1. 제안경과

○ 제안연월일 : 2021. 03. 11.

○ 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#### 2. 제안이유

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.

1.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----- 노인복지과

2.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 기부채납----- 도시정책과

#### 3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등 2건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.
- 먼저,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건은 별내동 822-11번지 2,435.8㎡를 한국토지 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연면적 3,600㎡(1,088평)의 노인복지관에 145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노인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, 규모면에서도 현재 규모가 가장 큰 호평동 해피누리복지관(2,348㎡)보다 더 크게 계획한 것은 미래의 고령인구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.

○ 다음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 기부채납 건은 백봉지구 주택건설사업 자인 ㈜하나자산신탁 소유토지 호평동 산37-22번지 등 19필지 33,321㎡ 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부지는 2016년도에 백봉지구 공동주택용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으로 취득목적은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것으로 2018년 감정당시 가 감정가는 약 616억원입니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7조에 따라 조건 없는 기부채납에 부합하며, 우리시의 오랜 숙원인 종합병원 유치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붙임 1

### 관계 법령

#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#### 제7조(기부채납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<u>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</u>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- 1.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
- 2.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[전문개정 2015.1.20] [[시행일 2015.7.21]]

#### □ **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**[시행 2020.1.3.] [법률 제29939호]

#### 제5조(기부채납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(寄附)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 [개정 2014.7.7]
- 1. 기부할 물건의 표시
- 2. 기부자의 명칭, 성명(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- 3. 기부의 목적
- 4. 기부할 물건의 가격
- 5. 기부할 물건의 도면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

- 각 기부자의 성명·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전대차(轉貸借)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8.1.9]
- 1. 전대(轉貸)하려는 재산의 표시
- 2.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, 수익방법 및 사용·수익기간
- 3.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·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
-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"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무상 사용·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
- 2. 재산 가액(價額) 대비 유지·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
- 3. 무상 사용·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. [신설 2014.7.7]

[전문개정 2009.4.24] [[시행일 2009.4.27]]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・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・군・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・군・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・군・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- 1. 사업목적 및 용도
- 2. 사업기간
- 3. 소요예산
- 4. 사업규모
- 5. 기준가격 명세
- 6. 계약방법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 2. 9.>
- 1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
- 2. 「도시개발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
- 3.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
-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득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가목・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・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・처분
- 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
- 6.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 용지 매각
- 7.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
- 8. 「지방세법」 제117조에 따른 물납
- 9.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・처분
- 10.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・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・처분
- 11.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
- 12.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.
- 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
- 2. 취득・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
- 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
- 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-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5. 7. 20., 2017. 7. 26.>
-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1건"이란 다

-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같은 취득·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
- 2.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·처분 하는 경우
- 3.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
- 4.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・처분하는 경우
- 5. 해당 재산에 인접(隣接)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6. 분필(分筆)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·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7.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① 이 조에서 "기준가격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. 다만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 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 <개정 2016. 8. 31.>
- 1. 토지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
- 2. 건물
- 가. 단독주택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
- 나. 공동주택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
- 다.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
-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
-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

#### 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[시행 2019.11.28.]

제19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9. 8. 27.>
- 1. 계획의 목표
- 2.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
- 3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

- 3의2.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
- 4.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
- 5. 예산 집행 계획
- 6.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
- 7.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 단지, 항만, 공항, 철도, 일반국도,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· 군계획시설의 정비·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·산업 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한다.